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40 | 2024.06.17 (2024.06.10~06.16)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6.10~06.16)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관계부처 합동)>은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한 바, 주요국의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한 바, 주요국의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民黨政협의회를 거쳐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바, 이는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24.6월말)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착수하여 금융위·금감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25.3월까지 구축하고,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의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되며,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행정)예고】

<환경부>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 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시 조합 임원의 교체에도 관련 자료가 원활하게 인계되고, 조합임원 부재 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를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는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적 · 객관적 정기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고,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 ·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

가맹금의 범위에 배달비 제외,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매출액에는 가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제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는 필수물품의 요건을 규정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 등은 제외, 가맹본부가 광고 ·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9인)**」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의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의 감면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22인)**」 ,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항이 지역과 연계되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

지역단절 등의 문제로 동일하게 지하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도시철도지하화 사업과 도시철도부지를 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고민정의원 등 15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의사일정(안)】

지난 6/10(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최되어 국회 법사위 등 총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향후 교섭단체 대표연설(6/24~25), 대정부질문(6/26~29) 개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6/13(목) 본회의에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연기된 바 있으며, 이에 여당은 당내 구성된 15개 민생특위를 통해 민생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순직해병특검법 입법청문회(6/21) 개최 및 증인 12명(참고인 3명)을 채택하였으며, 금주에도 야당은 상임위별 부처 업무보고(불응시 청문회) 및 주요 현안 국정조사 등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계부채지원 6법(은행법·서민금융법·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과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간 단축(330일→75일)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기획재정부) 9
-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금융위원회) · 10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금융위원회)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15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5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5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7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18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20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2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부) 2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2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22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23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청) 24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림청) 2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26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의원 등 15인) 2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2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2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2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2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의원 등 11인)	29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의원 등 10인)	30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30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3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의원 등 15인)	32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9인)	3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34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2인)	34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2인)	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의원 등 14인)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3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3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3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3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3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4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40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의원 등 15인)	40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의원 등 10인)	4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42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의원 등 18인)	42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4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의원 등 10인)	4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6인)	4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의원 등 12인)	4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4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의원 등 11인)	46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46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47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의원 등 11인)	47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의원 등 10인)	48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의원 등 11인)	48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의원 등 16인)	4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의원 등 12인)	50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의원 등 10인)	51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의원 등 15인)	51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52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의원 등 15인)	52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의원 등 11인)	53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의원 등 18인)	5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54
•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한병도의의원 등 10인)	5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55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56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의원 등 16인)	57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의원 등 10인)	57
•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22인)	58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7인)	59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59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60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6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61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6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6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44인)	6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44인)	6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6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64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64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65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의원 등 12인)	66
•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고민정의의원 등 15인)	6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의원 등 14인)	67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68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	6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 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6.03~06.09)

[바로가기](#)

- **[건설/부동산]**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도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금융]** 금융위원회, 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발표
- **[에너지·자원]**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
- **[해외 규제]** 美 재무부,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규정(내국세법 Section 30D) 최종안 발표
- **[ES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6.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밸류업 계획 관련사항 기재 의무화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 - 소부장, 방산·의약품, 중소기업 품목 분야 확대 - 물류·사이버 보안 등 경제안보서비스 신규 도입 - 공급망 선도사업자 선정후 공급망기금 지원	2024-06-07
-------	---	------------

기획재정부는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각각 논의함

* '21년 11월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중

(참석부처) 외교부, 과기부, 국토부, 농식품부, 산업부, 중기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식약처, 방사청, 산림청, 질병청, 관세청, 조달청 등

** 경제안보품목 :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기기·장비·소프트웨어 등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 (「공급망안정화법」 제2조 제4호)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방안

-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 및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연구기관, 협·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될 전망
-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
- 확대될 경제안보품목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
-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 (공급망안정화법 제2조 제5호)

②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

-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
-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

NFT(Non-Fungible Token)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함.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됨. 이러한 특성상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음. 또한 NFT는 블록체인의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은 주요국의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

※ (참고) 시행령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 정의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

NFT의 법적성격은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다만,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되며,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NFT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3.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 5가지 정형화된 증권* 외에,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확인하여야 함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집합투자증권

②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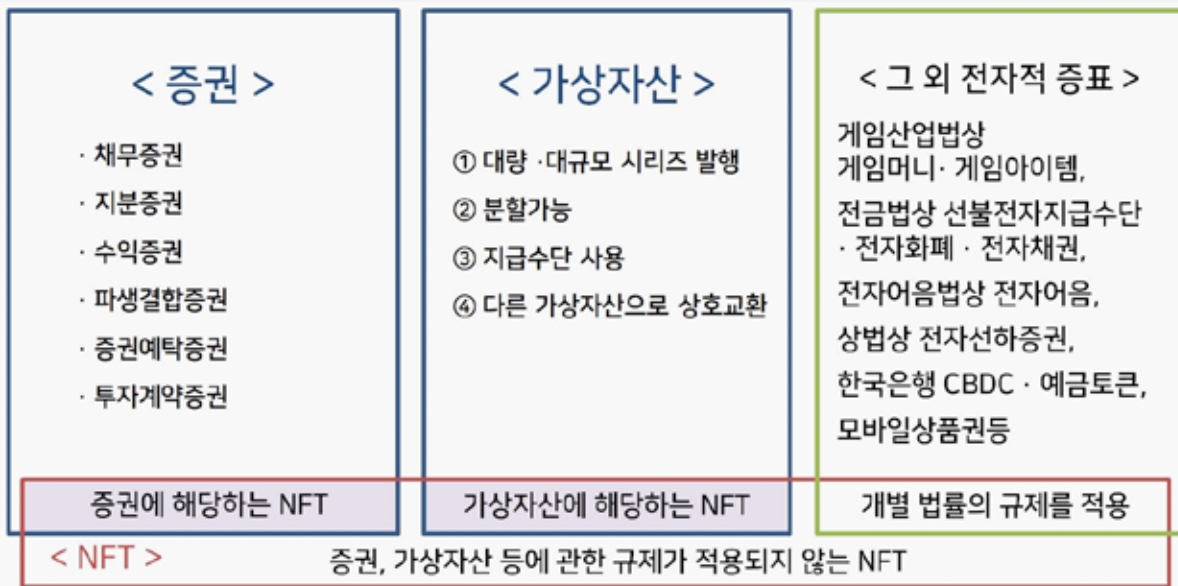
-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Ex) 사회 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Ex)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Ex)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NFT와 다른 가상자산이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Ex)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Ex)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증권, 가상자산 및 NFT의 관계 >



금융위원회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06-13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25.3월까지 구축되고,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의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됨.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될 예정임

당정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民黨政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24.6월말)한 이후,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하여 금융위·금감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무차입 공매도 방지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 0.01% 이상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됨. '23.11월 기준 외국인 21사, 국내 80사로 잠정 집계됨

* 모든 공매도 주문前 차입 주식을 증권사에 사전 납입하는 경우에는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없으므로 제외

-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실시간·전산 관리하여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
-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의 점검 대상이 됨
-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함. 거래소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5.3월말까지 구축 완료 예정

▶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공매도를 소규모로 하거나 1회만 공매도 주문을 내리는 법인도 모두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갖추어야 함
-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됨

* 모든 공매도 주문前 차입 주식을 증권사에 사전 납입하는 경우에는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매도 법규 준수여부 검토, 기록보관 등 위주의 약식 기준 가능

▶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 강화

- 현재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역할은 차입공매도라는 사실을 통보받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함
-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 참고 :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적용대상 (요약) >

	기관(공매도잔고0.01% ↑, MM·LP) ※ 전체 공매도의 92% 이상	법인	[예외]주식 사전납입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 KRX NSDS 사후점검	O	X	X
내부통제기준	O	O	약식
증권사 확인	O	O	O

②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

- 단,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하는 ‘리콜’ 제도가 유지되나, 대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됨

▶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

-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비율이 적용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선방안은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함으로써 개인 투자자의 거래조건이 보다 유리해지게 됨

< 참고 : 대차·대주 제도개선 이후 비교 >

	상환기간		담보비율	
	현행	개선	현행	개선
대차	기간 제약 없음 리콜	90일, 연장 (최대 12개월) 리콜	현금 105% 주식 135% ↑	현금 105% 주식 135% ↑
대주	90일, 연장 중도상환요구X (90일 보장, 개인만 참여可)	90일, 연장 (최대 12개월) 중도상환요구X (90일 보장, 개인만 참여可)	현금 120% ↑ 주식 120% ↑	현금 105% 코스피200 120% (기타 주식: 대차 수준)

- : 개인에 대한 대주서비스가 기관 대차보다 더 유리한 부분

③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 벌금을 상향하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강화

-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함으로써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킴

< 참고 : 형사처벌 강화 이후 비교 >

		현 행	개 선
벌금	부당이득액·	부당이득액의 3~5배 (최소 5억원)	부당이득액의 4~6배 (최소 5억원)
	징역 기본 5~50억원 50억원~	1~30년	1~30년 3~30년 5년~무기

• '24.1.9. 이후 위반행위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법제화 → 처벌의 실효성도 강화

▶ 보다 실효성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도입

④ 기타 공매도 투명성 제고 등

-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 (기존: 발행량의 0.5% 이상 → 개선: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
-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CB·BW의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시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제한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6-11 시행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해 법원이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금액의 상한을 정액(定額) 방식인 1,1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앞으로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정률(定率) 방식으로 변경하여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경제상황에 맞게 보장하려는 것임 (제16조제2항)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6-11 시행
-------	-------------------------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또는 이주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13조제2호, 제17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2024-06-14 시행
---------	------------------------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직접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법률 제19437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2호, 2024. 6. 4. 공포, 6. 14. 시행)이 제정됨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 및 배전망 접속차단의 요건,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요건과 절차,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전력거래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제2조)

- 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을 ‘길이 15킬로미터 이내인 송전선로를 통해 변전소와 연계 되고, 연계된 변전소의 용량이 발전설비의 용량보다 크며, 전기의 생산으로 에너지 사용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연계된 송전·배전선로 및 변전소 등 전기설비의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정함

②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등 (제5조 및 제6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설치해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을 정하는 경우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의무설치자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③ 배전망의 안정적 관리 등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
-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에 대한 운영 방안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함
- 배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는 5년 이상의 기간으로 수립하는 배전망 증설 방법, 증설 시기 및 관련 설비 설치지역에 관한 계획 및 배전망 운영계획 등이 포함 되도록 함

④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검토 결과 통보 (제10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한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개선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지역의 조정에 관한 내용 및 전력의 사용 시기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⑤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 (제14조)

-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자격요건을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전기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등으로 정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의 전력거래 등 (제17조 및 제18조)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시간대별 전력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도록 함.
-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고장으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6-11 시행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납부통지 및 징수하는 경우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통지 및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

이에 따라,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이를 받을 자에게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하여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매달 공개해야 하는 사항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제23조제3항제10호 신설, 제23조제10항제3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6-11 시행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기능등급별 교육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83조제5항, 제87조제2항제1호, 제8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6-14 시행

(별지 제25호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됨

이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표시사항 확인 또는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검사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구매자의 특성, 구매·사용실태, 소비자 피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범위로 하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을 추가하고, 축산물을 수입신고 하는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및 정밀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1조, 제27조제1항제8호, 제44조의6 신설, 제44조의7 신설, 별표 5 제1호, 별표 5 제2호 등)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6-21 시행 예정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0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준법제도

이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평가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자율적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업무 기준 및 절차의 수립·운영, 내부감시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련 교육의 실시 여부와 그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매체 수, 공표 기간 및 지면크기를 줄이거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조정된 과징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90조의2 신설, 제90조의3 신설, 별표 6 제2호다목)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6.10. ~07.22.

웹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품질인증 기준을 개정된 대한민국표준에 따라 개선하고, 웹페이지 품질 인증시 인증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웹접근성 품질인증 세부기준 개정 (안 별표 1)

- 관련 국가 및 국제 표준 개정에 따라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항목을 현행 22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기존 심사 항목의 내용 및 범주를 수정함

②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신설 (안 별표 제5의2)

-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에 인증심사비와 직접경비를 더하여 산정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전화: 044-202-6155, 팩스: 044-202-603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14. ~07.12.
---------	-------------------------------	------------------------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골프장 이용규제 개선 등 체육시설법 개정 (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안 제2조의6)

- 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대한 결함 외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에 대하여도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통보, 보수·보강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
-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을 ‘중대한 결함’과 ‘중대한 결함 외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으로 규정

② 이용 우선권의 제공, 판매 (안 제7조의4)

-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기존 이용규제* 개선

*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예약 순서 또는 도착 순서로 한정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06.14.
~07.24.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골프장 이용규제 개선 등 체육시설법 개정 (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매년 3시간 이상 체육시설 안전교육 실시 (안 제1조의4)
- ② 체육시설 결함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결함 외 결함”의 경우 별도 행정처분 미부과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14.
~07.24.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럽피스킨병 발생 정보공개 근거 마련,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록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럽피스킨병 추가 (안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
- ②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 3 제2호거목)
- ③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하지 않는 등 방역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함 (안 별표 3 제2호소목)

*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미저장·미보관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등

- ④ 축산 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조정 (안 별표 3 제2호나목, 더목, 러목, 머목의 1), 버목의 1), 서목, 어목의 1), 2), 부목)

* 3회 이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에서 정한 상한액(1천만원,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거짓으로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1차·2차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전화: 044-201-2520, 팩스: 044-868-0628)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4.06.14.
~06.17.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기준 규정 (안 제11조)
 - 열분해유 등 폐기물 재활용 기업의 등록 부담 경감
- ②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업무 위탁 (안 제31조제5항)
 -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징수 업무 추진의 효율화

※ 문의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

환경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4.
~07.24.

사업추진 시 조합 임원의 교체에도 관련 자료가 원활하게 인계되고, 조합임원 부재 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를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2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25조, 제128조)
- ② 조합 부담 완화와 주민 알권리를 위해 지자체가 조합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사업시행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4조)

- ③ 조합 임원 부재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합원 1/3 이상의 동의로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 시 임기 및 업무 범위를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1조)
- ④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 조사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예외적 사유의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107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84, 팩스: 044-201-5532)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14.
~07.25.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었고,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었으나,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효과성 확보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에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 부과 (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준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관리사업자도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등록의무대상에 포함하고,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합산하여 자기관리형은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세대 이상일 때 등록 의무화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84, 팩스: 044-201-5532)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6.12.
~07.22.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을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개정됨(2024. 7. 3. 시행)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외 기관 참여가 가능한 임상적 성능시험,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감독 미준수 처분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에 참여기관 정보 작성 (안 제13조)**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외 기관 참여 시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서에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 ②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이 참여 가능한 시험 규정 (안 제14조의2)**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하에 미지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적 성능시험 규정 및 시험 중 참여 가능한 범위를 정하도록 함
- ③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의 시험 참여 시 준수사항 규정 (안 제17조)**
 -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감독에 따라 실시하도록 준수사항을 규정
- ④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제22조 및 별표 2)**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은 참여기관이 실시·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 부여하고 관리·감독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39, 팩스: 043-719-3730)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14.
~07.24.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통계 품질 제고를 위하여 공표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830호, 2022. 10.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의 통보시기를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9월에서 11월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 근거 마련 및 용어 정비 (안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의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 ②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통보시기 변경 (안 제22조제1항)**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시기를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로 개정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54, 팩스: 043-719-2250)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4.
~07.24.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정기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고,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 기한의 조정 (안 제11조의2)

-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함

② 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 (안 제16조의2 신설)

-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문적·기술적 점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③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정기점검 실시 (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의 예방과 확산 방지, 전문적·기술적 점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문의처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전화: 044-205-7481\)](tel:044-205-7481)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11.
~06.1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0086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에 대한 확인 및 증명서류 발급,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 등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유입 흰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인목구조기술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를 추가하여 이에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해 신설된 내용을 추가 (안 제34조)
- ②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의5)
- ③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여부에 대한 확인, 취소,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8조의2)
- ④ 목재이용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기준 마련 (안 제25조)
- ⑤ 목구조기술자의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를 추가 (안 제 28조제2항)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 (전화: 042-481-4204, 팩스: 042-471-144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등 16인)	2024-06-10 발의
---------	--	---------------

광주·대전·대구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큼.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은 2023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처리 건수 증가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광주·대전·대구회생법원 설치와 함께 고등법원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은 회생법원에도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가 광주·대전·대구고등법원 권역 내에 위치할 경우, 회생법원에도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전라남·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회생법원, 충청남·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회생법원, 경상북도는 대구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안 제3조 제12항 및 제13항, 제14항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등 15인)	2024-06-10 발의
---------	--	---------------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이 법의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공연히 이 법이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본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제1조 목적 규정도 일부 수정하고자 함 (안 제명 및 제1조)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06-10 발의

최근 대기업들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분할하기 전에 자기주식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후 분할·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여 그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아 현행법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분 요건을 확보하고 있음

이러한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회사 분리와 자회사의 지주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 배정 및 신주발행에 갈음한 자기주식 교부행위는 분할·분할합병 전 회사의 소주주에게 불리하고,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등 주주 간 소유지분구조 건정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2011년 자기주식 취득한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주주가 치 제고라는 자기주식 본래 목적에도 위배됨

따라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려는 것임 (안 제530조의8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06-11 발의

현행 법령상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이 있음

그러나 실무상 봉급 이외의 보상방법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 법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둬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342조의4 및 제342조의5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06-12 발의

현행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대해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을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만 맡긴다면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선택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거나 신주발행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자기주식의 보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341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달리 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에 따라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주의와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42조)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06-13 발의

2011년 개정 「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즉 자기주식은 주주 공동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물론이고 모회사인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도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자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자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60조의24)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2024-06-13 발의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으나 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보수액이 아니라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사 보수를 주주들이 정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해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실질화하고자 함 (안 제382조의3, 제542조의14 신설)

정무위원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024-06-10 발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한 지급정지 규정과 동일한 기준을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도 적용하고자 하며,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 사전 예방과 신속 구제를 위한 것임

주식리딩방,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 투자 등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종 불법금융 사기범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적으로 변하고, 그 피해 규모 및 피해자 범위도 확대됨

현행법에 주식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해당 금융 사기범죄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자들이 남아 있는 범죄수익을 빼돌리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사후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금융회사가 자사의 거래계좌 중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계좌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조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8조제2항 신설)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2024-06-11 발의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협의요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켜 지불하게 하거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일부 가맹본부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거나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제한 제도가 보복조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맹금의 범위에 배달비를 제외하도록 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매출액에는 가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제외하도록 함 (안 제2조제6호, 제6조의6 신설)
-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는 필수물품의 요건을 규정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 등은 제외함 (안 제12조제2항 신설)
- ③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 (안 제12조의6제1항 신설)
- ④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함 (제13조제2항 삭제)
- 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3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2024-06-11 발의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기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2024-06-11 발의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요율은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은 급증해왔음. 2023년도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은 59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익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반해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요 대출 차주인 개인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높아지고 있음.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2024년도에 2천억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이 이를 방증한다는 지적임

게다가 여전히 금융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이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제2항)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5인)

2024-06-13 발의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채무와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75조제2항 등)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9인)

2024-06-12 발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라고 정함 (안 제2조제4호)
- ②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를 마련함 (안 제4조)
- ③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안 제5조)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④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안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 (안 제15조,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교류의 차단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 ⑥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안 제25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⑦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안 제26조)**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등 13인)

2024-06-13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유사한 규정 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초국적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고, 거래대행사를 통하여 직접 도급 관련 지시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2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등 12인)

2024-06-13 발의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 광고도 구매 및 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 이력 등 소비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 개인의 관심, 기호, 성향 등에 맞는 광고 즉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 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워 개인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소비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 및 소비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2항)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2024-06-13 발의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경우 금융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와 같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3항제3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024-06-10 발의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는 4,672명으로 2018년 5,164명 대비 약 10%가량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안 제 126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2024-06-11 발의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이래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동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임

그러나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지난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채무자의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소상공인 폐업이 가속화될 경우 서민경제의 근간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안정적, 실효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제도를 사회적으로 지속,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안 제96조의3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2024-06-12 발의

현행법은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함

그런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규정할 뿐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조세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업 대부분이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보다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시켜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이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2024-06-12 발의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이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2024-06-11 발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2024-06-12 발의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함 (안 제91조의18제3항제5호)
-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상향함 (안 제91조의18제2항)
- ③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천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2천만원)의 비과세한도를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안 제91조의18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9조의2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2024-06-13 발의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2024-06-13 발의

현행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등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시공자등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진행을 위하여 본 특례의 적용이 연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사업 시공자등에 대한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26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2024-06-14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한국의 SDC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9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4-06-13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고려했을 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환원제철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로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2024-06-11 발의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 혜택과 변화폭이 작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침체기에 근로소득자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안 제50조)**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2024-06-13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 2024년 1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기록하여 역대 최저수준인 상황임.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대한민국의 양육비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97.6만원으로 평균 가구소득 대비 19.3% 수준으로 부모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기 위함 (안 제12조제3호머목)**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5인)

2024-06-11 발의

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를 설치할 수 있음

지방대학 역시 취업률 제고 및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학과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또는 첨단산업과 관련한 계약학과등은 주로 수도권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대학의 취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4항 신설)

교육위원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2024-06-11 발의

최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여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정원을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 발표하였음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붕괴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그침.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간 의료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음

전남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하여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움.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25%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지역산업단지 노동자 등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으나 대학병원이 없어 중증 및 응급환자의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신설을 꾸준히 요청하였음. 목포대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의대신설 운동에 헌신하며 목포대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음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 4천여억원 등 경제성을 입증하였음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면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전남권 의대신설의 의지를 밝힌 바 있음

이에,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지역완결적 의사인력 양성시스템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 및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 (안 제2조)
- ②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안 제3조)
- ③ 국가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④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 (안 제9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2024-06-10 발의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회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의원 등 18인)

2024-06-10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3)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2024-06-10 발의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2024-06-11 발의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재산상에 피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이 어렵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형사적·민사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사기죄의 경우 명예훼손 및 사기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서 사칭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없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업무 목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여서 그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2차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해자의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이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타인사칭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한 바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칭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6인)

2024-06-12 발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번 생산되면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된다는 특징을 가짐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유통방지 대책 마련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U는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고, 독일은 지난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

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의무 등을 부과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며,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의무·책임자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2024-06-14 발의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이용하는 등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물각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의4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2024-06-11 발의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8조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2024-06-14 발의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하여야 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2024-06-11 발의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여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

2024-06-11 발의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30조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2024-06-12 발의

최근 한국 영화는 국제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작품성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세계 영화시장에서의 문화적 위상이 한층 격상되고 있음.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발전기금이 자리함

그러나 최근 정부가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계획을 밝히면서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및 운용에 대한 위기감이 심화됨. 이에 법률에 부과금 징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그런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영화발전기금이 문화의 생명력인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영화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확인한 후에 해당 영화업자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30조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06-10 발의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경우 정부가 차산업과 관련한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시장의 변화에 보다 시의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고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2024-06-10 발의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수산물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하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받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수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여야 함 (안 제16조의2 신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차액 지급비율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 ③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및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 (안 제1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16조의4 신설)
- 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6인)

2024-06-11 발의

현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 등에 어려움이 있고 농산물 가격의 폭락 등이 반복되고 있어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농산물 생산자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농산물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을 일정 비율로 하여 보전하는 등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가격안정 및 국가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산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6조의2제5항 신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함 (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4항 신설)
- ④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안 제16조의3 신설)
- 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최저보장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

2024-06-14 발의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구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수입의무물량과 수급 부족 물량을 수입·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수입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또한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국영무역 품목 사업의 경우 수입단계 이후의 공급 및 판매 등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입비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06-10 발의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꽃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둔감한 소비 성향을 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일부 수입 꽃 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혼용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2024-06-11 발의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인삼산업은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또한 인삼 생산자의 농산물우수관리(GA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안정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등을 도모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신설)

- ②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및 6조 신설)
- ③ 인삼 경작농가의 농작물우수관리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함 (안 제8조제2항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06-11 발의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자원에 대하여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도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4항)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의원 등 15인)

2024-06-11 발의

지난 2020년 공익형직불제도의 도입과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생산의 과잉이나 가격 등이 하락하는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여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하여 최근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농가 재배면적의 47% 수준을 차지하는 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넘어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불안정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쌀값 안정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안정적인 양곡 수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량 안보 및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신설)
- ②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16조의3 신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16조의4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2024-06-12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들에게 소금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이력제가 의무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으며,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연한 실정임

또한,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는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소금이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제2항)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8인)

2024-06-10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혁신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2024-06-10 발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으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함 (안 제16조의6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법안(한병도의원 등 10인)

2024-06-11 발의

생활소비재산업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산업임

최근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심미성·상징성·자기만족과 같은 주관적 욕구 충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신흥국의 성장과 한류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해외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생활소비재산업이 새로운 IT기술, 콘텐츠, 첨단소재, 디자인 등과 융합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생활소비재산업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격과 수익이 점차 낮아지는 등 산업의 수명주기 상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고, 개도국의 중저가품과 대비할 때는 가격경쟁력에서, 선진국의 고가품과 대비할 때는 품질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직면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도약 혹은 쇠퇴라는 갈림길에 선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한 시점임. 이에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6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안 제7조 및 제8조)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산업통계를 확보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생활소비재산업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안 제9조)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생활소비재를 지정할 수 있고 우수생활소비재의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0조 및 제11조)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안 제12조 및 제13조)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기업의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그리고 생활소비재기업·산업의 첨단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2024-06-12 발의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일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에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연평균 10.8%와 8.0%의 증가율을 보여 산업부문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가 필요함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고, 입주기업의 파산 또는 이전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자력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3항제8호의 2 및 제45조의5제2항제1호·제2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2024-06-13 발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포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을 말함)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암추를 보관·관리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광물 정보의 보관·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6조의2 신설 및 제96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2024-06-14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과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일부 농어촌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 내 효과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항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2항제2호의2·제5호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2024-06-14 발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음

매년 온열·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5배나 증가했음. 특히, 이러한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등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진단되고 있음

한편,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의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오세희의원 등 22인)

2024-06-13 발의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경영난에 처하여 정부는 정책자금,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였음. 방역조치가 종료되고,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은 이자 납부와 대출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일부 법률이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에 한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의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및 보증 지원, 대출의 감면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적용 대상으로 함 (안 제5조)
- ② 소상공인이 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할 경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하게 하도록 함 (안 제6조)
- ③ 소상공인이 요청할 경우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장기분할상환하도록 함 (안 제7조)
- ④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에 따라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⑤ 소상공인이 부채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그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⑥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이자감면,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하도록 함 (안 제10조)
- ⑦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대상자 및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안 제11조)
- ⑧ 정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함 (안 제12조)
- ⑨ 부채가 없거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상공인에 대한 향후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및 부채를 조기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7인)

2024-06-11 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막대한 상황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4)

보건복지위원회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06-11 발의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 모든 부처가 관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을 말함 (안 제2조제1호)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5조 및 제6조)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보급·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8조 및 제9조)
- ④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체계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를 각각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⑤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국내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함 (안 제12조)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 (안 제14조)

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2024-06-11 발의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24-06-10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휴직·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휴가 부여를 암묵적·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휴가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여전히 자녀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직장 내 남녀 근로자의 채용·승진·퇴직 등 근로 전반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76조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2024-06-11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폭우·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상현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에서 각종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제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제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 37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06-11 발의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다태아인 경우에는 45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 양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 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장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상응하여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출산 및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제1항제1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2024-06-11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의 양육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44인)

2024-06-12 발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의 경우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병원 간병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안 제91조의2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44인)

2024-06-12 발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나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대상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은 24시간 근무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간병인을 상대로 간병서비스를 소개·알선해주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8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2024-06-12 발의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폭언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근로자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언등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들의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3회 이상의 업무 중단을 발생시킨 고객에게는 고객응대서비스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폭언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 등의 요청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응대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안 제41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2024-06-14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2024-06-14 발의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음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

이에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임 (안 제13조의6, 제66조제1호의4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2024-06-10 발의

공항의 개발과 운영이 단순히 항공운송과 항공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이 있던 시대가 저물고, 공항의 역할이 경제와 산업·사회와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항이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항 주변지역을 상생·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아울러 국내 공항 당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13개의 지방공항 중 상당수는 2016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공항이 적자운영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것은 지역공항이 지역의 경제, 산업, 사회, 문화와 연계·융합되어 특화되지 못하고 단순히 교통 거점의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공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기존 ‘단순한 교통 거점의 역할’에서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플랫폼’으로 육성·발전시킬 것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행이 미미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항이 지역과 연계되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및 제2조)
- ② 공항경제권 개발과 육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지원방안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③ 공항경제권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으로, 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계획으로 하고,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등 운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④ 사업구역과 적합업종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
- ⑤ 인가·허가 등의 의제와 일괄협의를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
- ⑥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항운영자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8조)

- ⑦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공항경제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 (안 제43조 및 제45조)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2024-06-11 발의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
- ②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해 5개월 이상 지원하고,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신설하도록 함 (안 제8조제1항)
- ③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의 90%로 확대하고, 소득증대사업에 직업훈련 지원을 추가함 (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고민정의원 등 15인)

2024-06-12 발의

지난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공포되어 생활권을 단절시키는 철도의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및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됨

그런데 철도계획 수립 주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적용 대상에서 '도시철도' 구간은 제외됨

이에 지역단절 등의 문제로 동일하게 지하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도시철도지하화 사업과 도시철도부지를 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도시철도부지와 도시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도시철도지하화사업 및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3조)
- ③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 ④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 ⑤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⑦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 ⑧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4인)

2024-06-12 발의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원전,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전략을 발표했음

이러한 첨단산업은 그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원천기술의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큼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첨단산업 기술개발의 거점이 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등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동안 지방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등을 적극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정을 위한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도록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7조의8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2024-06-13 발의

현행법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실성이 낮아 현재까지 종합병원 건축비 신청 및 지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종합병원 지원 대상을 종합병원의 분원까지 확대하고, 대상지도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2)

국토교통위원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

2024-06-13 발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안 제7조제4항 신설, 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군 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종전부지의 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 내 기반 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함

② 사업의 위탁 및 대행 근거 마련 (안 제8조의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 부분을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③ 사업 추진 관련 특례의 도입 (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신설)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등 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관한 규정 및 훼손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 내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하도록 함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운영위	전체회의	6/18(화) 11:00	- 간사 선임의 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6/17(월) 14: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6/21(금) 10:00	- 입법청문회 (일정 변경 가능성 有)
교육위	전체회의	6/18(화) 11:00	- 간사 선임의 건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과방위	전체회의	6/18(화) 10:00	- 법안 심사
행안위	전체회의	6/19(수) 15:00	- 업무보고
문체위	전체회의	6/18(화) 11:00	- 간사 선임의 건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수현의원 발의)
농해수위	전체회의	6/20(목) 14:00	- 간사 선임의 건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복지위	전체회의	6/19(수) 10:00	-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
환노위	전체회의	6/17(월) 14:00	- 간사 선임의 건 - 소위원회 구성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 - 업무·현안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토위	전체회의	6/18(화) 10:00	- 전세사기 등 주요 현안보고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6/17(월) 10:00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	조국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17(월) 10:00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조정훈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17(월) 10:00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	윤후덕·이재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실
	6/17(월) 14:00	경인선 부천구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영석·이건태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6/18(화) 10:00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국회 포럼	한기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6/18(화) 13:00	철도지하화의 쟁점과 공공철도의 과제	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18(화) 14:00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서미화·박지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18(화) 14:00	최저임금 서비스노동자 2,387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증언대회	정혜경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실
	6/18(화) 15:00	공공디자인포럼 창립 심포지엄 - 한국의 공공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	정동영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6/18(화) 16:00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상휘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6/19(수) 09:00	제1회 K뷰티 활성화포럼 - 반영구 화장·타투·SMP 등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위한 입법 촉구	엄태영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6/19(수) 10:00	출산·양육 정책 포럼 - 저출생!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영세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6/19(수) 13:00	제40회 우이령 포럼 : 올림픽과 환경	안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0(목) 10:00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	박정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6/20(목) 10:00	방송3법 등 언론개혁과 22대 국회의 역할	이훈기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실
	6/20(목) 10:00	심화하는 국제 대립구도 표류하는 한-러 관계 무엇을 해야 하나?	위성락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0(목) 14:00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 및 대책 마련	김미애·김승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6/20(목) 14:00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	한기호 의원실, 강 원특별자치도	의원회관 1소회의실
	6/20(목) 14:00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조은희 의원실, 청년재단	의원회관 2세미나실
	6/21(금) 10:00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1] -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	박충권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6/17(월)	「최근 현재결과와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4호)」 발간	국회사무처	
	6/17(월)	「THE 현안」 제15호 발간 - 국가안보	국회도서관	
	6/19(수)	「금주의 서평」 제683호 발간 - 도서명 : 고통을 말하지 않는 법 저자 : 마리아 투마킨		
	6/20(목)	「현안, 외국에선?」 제84호 발간 - 미국의 경제 현황: 제118대 의회 이슈		
	6/20(목)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6/10(월)	「이달의 입법민원」(2024. 5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6/10(월)	「팩트북」 제110호 발간 - 병역제도와 국방개혁	국회도서관	
	6/10(월)	「THE 현안」 제14호 발간 - 사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위험 고독 그리고 외로움		
	6/1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7호 발간 -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6/12(수)	「금주의 서평」 제682호 발간 - 도서명 :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저자 : 자미라 엘 우아실, 프리데만 카릭		
	6/12(수)	「World&Law」 제2024-11호 발간 - 교제폭력, 제대로 처벌하려면?		
	6/12(수)	「Data & Law」 2024-5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6/13(목)	「현안, 외국에선?」 제83호 발간 - 일본의 新 NISA, 자산증식을 위한 평생 비과세제도		
	6/13(목)	「NABO Focus」 제72호 발간 - 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6/11(화)	「이슈와논점」 제2244호 발간 - 해상풍력 개발,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필요		
	6/12(수)	「이슈와논점」 제2245호 발간 -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6/13(목)	「이슈와논점」 제2246호 발간 - AI 혁명 시대의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6/13(목)	「이슈와논점」 제2247호 발간 - 국회의 책임성과 국회임기만료시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문제		
	6/10(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98호 발간 -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방식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6.10~06.16)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6/11(화)	금융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6/12(수)	에너지 · 자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6/14(금)	소송	기존의 행정기준 및 유권해석과 다른 방향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신고 반려처분 취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6/14(금)	지적재산권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중국 판례 동향 -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사례 - 생성형 AI 산출물을 저작권 침해물로 인정한 사례
6/14(금)	기업인수/합병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